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요】



2021년 12월
재무성 관세국 경제연계실

I. RCEP 협정 개요

- 1 RCEP 협정 개요
- 2 시장접근 교섭 결과
- 3 규정 분야

II. 상품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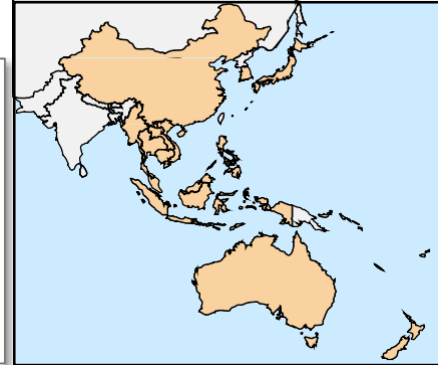
- 1 상품 무역 장 개요
- 2 RCEP 협정상 일본 측 양허표
- 3 각 상품의 합의 개요

I -1 RCEP 협정 개요

경 위

- 2012년 11월 RCEP 협상 개시 선언.
- 2020년 11월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서명.
- 2022년 1월 1일 발효 예정.

(2021년 11월 2일까지 일본 외에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뉴질랜드가 비준서 등을 기탁하여 발효 요건을 충족)



의 의

- 본 협정은 전 세계의 GDP, 무역 총액 및 인구의 약 30%, 일본의 무역 총액 중 약 50%를 차지하는 지역과의 경제연계협정.
- 역내 무역·투자 촉진 및 공급망 효율화를 위하여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발전 단계와 제도가 상이한 다양한 국가 간에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등의 폭넓은 분야의 규정을 정비.

※ 인도(2019년 11월 이후 협상 불참)의 경우 복귀를 촉구했으나 작년 서명에 불참. 협정은 발효일부터 인도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고 규정(인도 이외의 국가에는 협정 발효 후 18개월째 되는 날에 개방). 또 인도의 향후 가입 원활화 및 관련 회의 옵서버 참가 용인 등을 규정한 15개국 장관선언문을 발표.

대 상 분 야

상품 무역 / 원산지 규정 /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 무역구제 / 서비스 무역 / 자연인의 일시 이동 / 투자 / 지식재산 / 전자상거래 / 경쟁 / 중소기업 / 경제 및 기술협력 / 정부조달 / 분쟁해결 등

참 여 국

ASEAN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일본, 중국,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

- 인구
22.7억 명(2019년)
(전 세계의 약 30%)
- GDP
25.8조 USD(2019년)
(전 세계의 약 30%)
- 무역 총액(수출)
5.5조 USD(2019년)
(전 세계의 약 30%)

I -2 시장접근 교섭 결과

일본 상품의 RCEP 협정 당사자 시장에 대한 접근

【대 일본 관세 철폐율(품목수 기준)】 86%~100%(ASEAN·호주·뉴질랜드), 86%(중국), 83%(한국)

공업제품

- ✓ 14개국 전체에서 약 92%의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확보.
- ✓ 중국 및 한국의 무관세 품목 비율이 상승(중국: 8%→86%, 한국: 19%→92%).

(최종 관세 철폐 품목의 예)

- 중국: 전기자동차용 중요 부품(모터의 일부, 리튬이온 축전지 전극·소재의 일부), 휘발유차용 중요 부품(엔진부품의 일부, 엔진용 펌프의 일부), 철강제품(열연강판의 일부, 합금강의 일부), 섬유제품(합성섬유직물의 일부, 부직포)
- 한국: 자동차부품(캠샤프트, 에어백, 전자계 부품), 화학제품(액정 보호 필름 원료), 섬유제품(합성섬유직물의 일부, 면직물의 일부)
- 인도네시아: 철강제품(스프링의 일부, 저장조·탱크)
- 태국: 디젤엔진부품의 일부

농림수산물 등

- ✓ 중국 등과의 사이에서 일본의 수출 관심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확보.

(최종 관세 철폐 품목의 예)

- 중국: 즉석밥 등, 쌀과자, 가리비, 연어, 방어, 절화, 소스혼합조미료, 청주
- 한국: 과자(사탕, 판초콜릿), 청주
- 인도네시아: 쇠고기, 간장

RCEP 협정 당사자 상품의 일본 시장에 대한 접근

【일본의 관세 철폐율(품목수 기준)】 88%(대 ASEAN·호주·뉴질랜드), 86%(대 중국), 81%(대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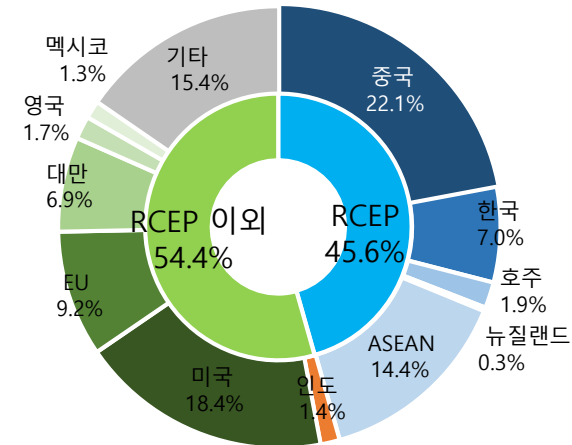
공업제품

- ✓ 화학공업제품, 섬유·섬유제품 등은 관세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

농림수산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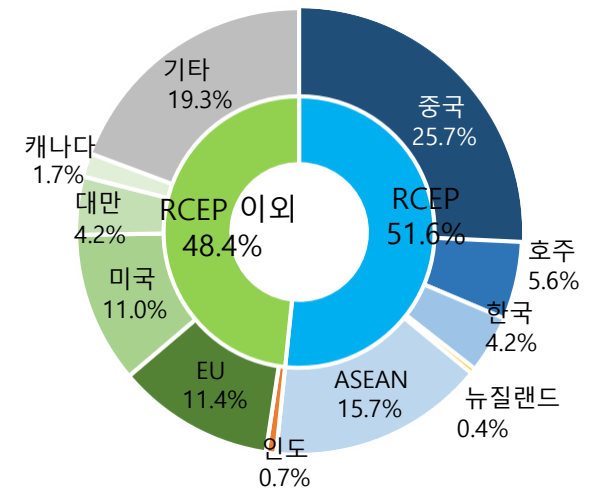
- ✓ 중요 5대 품목(쌀, 보리,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감미자원작물)을 관세 삭감·철폐에서 제외.
- ✓ 중국에 대해서는 닭고기조제품과 채소 등(양파, 파, 당근, 표고버섯, 냉동 토란, 냉동 브로콜리, 뱀장어조제품 등)을 관세 삭감·철폐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

일본의 수출 중 RCEP 참여국 비중
(2020년 ※확정치)



총 68.4조 엔

일본의 수입 중 RCEP 참여국 비중
(2020년 ※확정치)



총 68.0조 엔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I-3 규정 분야

상품 무역

- ✓ 내국민 대우 의무 외 비관세조치에 관한 협의 요청에 대한 대응 의무 및 수입허가절차 변경 시의 통보 의무 등을 규정.

원산지 규정

- ✓ 본 협정상 관세 철폐 또는 삭감 대상이 되는 원산지 상품의 인정 요건 및 증명 절차 등을 규정.
- ✓ 다른 당사자의 원산지 재료를 자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할 수 있음(누적)을 규정.
- ✓ 제3자 증명 및 인증수출자 제도를 채택하고 일정 기간 내에 생산자·수출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도 도입할 것임을 규정. 이와 더불어 일본은 발효 시부터 수입자 자기신고 제도를 도입.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 관세법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 있는 적용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전심사결정 제도와 통관 절차에 수치 목표를 설정하는 등 통관 신속화와 통관 절차 간소화에 도움이 될 규범을 규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적용의 투명성 확보 및 당사자 간의 협력 강화를 규정.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 ✓ 상품 생산방식 등에 관한 요건 및 이들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 및 투명성 확보에 관한 의무 등을 규정.

무역구제

- ✓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에 대해 투명성 확보 및 절차 등을 규정.

서비스 무역

- ✓ 서비스 무역에 관한 내국민 대우 의무, 시장접근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규제·조치의 투명성 확보 등을 규정.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 및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추가적인 규범 등도 규정.

자연인의 일시 이동

- ✓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의 수행에 종사하는 자연인의 일시 입국 및 체류 허가 및 절차 등을 진행할 시의 규범을 규정.

투자

- ✓ 내국민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및 이행요건(기술 이전 요구 및 로열티 규제 포함) 금지(이들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각 당사자의 조치는 유보 목록에 기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할 의무 및 정당한 보상 등을 지불하지 않는 수용 금지 등을 규정.

지식재산

-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 특허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행사에 대해 규정.
- ✓ 유명상표 및 부분 산업디자인 보호, 악의적 상표 출원 거절·등록 취소 권한, 직권에 의한 수입 금지 절차 확보에 관한 의무 등을 규정.

전자상거래

- ✓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하여 전자적 전송에 관세 불부과, 컴퓨터 설비의 위치 요구 금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Data Free Flow), 전자서명, 소비자 보호 등을 규정.

경쟁

- ✓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경쟁법과 규정의 채택·유지 및 집행, 기업의 소유 형태를 불문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 경쟁 당국 간의 협력 추진 등을 규정.

중소기업·경제 및 기술협력

- ✓ 중소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과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활동 추진 등을 규정.

정부조달

- ✓ 중앙정부기관이 실시하는 정부조달 법과 규정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규정.

분쟁해결

- ✓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 패널 절차 등을 규정.

I. RCEP 협정 개요

- 1 RCEP 협정 개요
- 2 시장접근 교섭 결과
- 3 규정 분야

II. 상품 무역

- 1 상품 무역 장 개요
- 2 RCEP 협정상 일본 측 양허표
- 3 각 상품의 합의 개요

II-1 상품 무역 장 개요

내국민 대우 의무 외에 부속서 I(관세 양허표)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신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할 의무를 규정. 동일 품목에 대해 여러 적용 세율이 있을 때 적용할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

※RCEP 협정에 품목별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 할당 제도, 가공·수선을 위해 수출된 화물의 면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주요 규정

제2.1조, 제2.2조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제2.3조	내국 과세 및 규정과 관련해 그 밖의 당사자들의 상품을 국내 상품과 동등하게 취급할(내국민 대우) 의무를 규정
제2.4조	부속서 I(관세 양허표)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신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할 의무를 규정
제2.6조	동일 품목에 대해 여러 적용 세율이 있을 때 적용할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제2.10조	국내 법과 규정에 규정된 대로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인 상품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의무를 규정
제2.16조	WTO 협정 또는 본 협정에 기초한 것 외에는 다른 당사자의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비관세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
제2.19조	수입허가절차와 관련해 새로운 절차를 채택할 때나 기존 절차를 수정할 때는 일정 기간 내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통보할 항목 등을 규정

II-2 RCEP 협정상 일본 측 양허표(부속서 I)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각 당사자는 부속서 I (관세 양허표)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신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일본의 양허 내용은 국가별로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①대 ASEAN·호주·뉴질랜드 ②대 중국 ③대 한국 ※양허표 비고란 참조

일본 측 양허표(부속서 I)

세번
수입 상품의 세번(HS 2012)에 기초
함

기준세율

관세가 인하될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개시 기준이 되는 세율을 표시.

※부속서 I의 목적상, 각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세율은 2014년 1월 1일에 발효 중인 각국의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반영한다.

關税品目	品名	基準 税率	1 年目	2 年目	3 年目	4 年目	5 年目	6 年目	7 年目	8 年目	9 年目	10 年目	11 年目	12 年目	13 年目	14 年目	15 年目	16 年目	17 年目	18 年目	19 年目	20 年目	21年 目以降	備考
030520.010	1 にしん(カルペア属のもの)の卵(こんぶかずのこを除く。)	8.4%	7.6%	6.9%	6.1%	5.3%	4.6%	3.8%	3.1%	2.3%	1.5%	0.8%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030520.030	2 きけ科のものの卵	3.5%	3.2%	2.9%	2.5%	2.2%	1.9%	1.6%	1.3%	1.0%	0.6%	0.3%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3 たら(ゴドゥス属、テラグラ属又はメルルシウス属のもの)の卵及びこんぶかずのこ																							
030520.020	ー たら(ゴドゥス属、テラグラ属又はメルルシウス属のもの)の卵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030520.040	ー こんぶかずのこ		1.1%	8.2%	7.3%	6.4%	5.5%	4.5%	3.6%	2.7%	1.8%	0.9%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030520.090	4 その他のもの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구분: U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
부터 제외됨

II-2 RCEP 협정상 일본 측 양허표(부속서 I)

일본 측 양허 패턴	내용
①즉시 철폐	협정 발효일에 관세를 철폐
②11년차에 철폐	협정 발효일부터 11회에 걸친 매년 균등한 관세 인하를 통해 기준세율을 11년차에 철폐
③16년차에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6회에 걸친 매년 균등한 관세 인하를 통해 기준세율을 16년차에 철폐 · 협정 발효일부터 15년차까지는 기준세율을 유지하고 16년차에 철폐
④21년차에 철폐	협정 발효일부터 21회에 걸친 매년 균등한 관세 인하를 통해 기준세율을 21년차에 철폐
⑤기준세율 유지	협정 발효일부터 기준세율을 유지
⑥삭감	· 협정 발효일에 일정 관세 인하 후 그 세율을 유지 · 협정 발효일부터 11년차(또는 16년차)까지 매년 균등한 관세 인하를 실시, 11년차(또는 16년차) 이후는 그 세율을 유지
⑦제외 품목 (양허표 구분: U)	관세 철폐 등의 양허 없음

관세 인하 . . . 해당하는 해의 첫날에 실시

대상국	관세 인하 기간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첫 번째 연도에 대해서는 <u>협정 발효일부터 이후 3월 31일까지의 기간</u>.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4월 1일~3월 31일까지의 기간.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첫 번째 연도에 대해서는 <u>협정 발효일부터 이후 12월 31일까지의 기간</u>.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기간.

II-3 각 상품의 합의 개요(농림수산물)

RCEP 참여국 상품의 일본에 대한 접근

- (1) 중요 5대 품목(쌀, 보리,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감미자원작물)을 관세 삭감·철폐에서 모두 제외.
- (2) 농림수산품의 관세 철폐율은 TPP, 일본-EU EPA(각 82%)보다도 대폭 낮은 수준으로 억제.
(대 ASEAN·호주·뉴질랜드는 61%, 처음으로 EPA를 체결하는 중국은 56%, 한국은 49%)

품목	중국	한국	ASEAN·호주·뉴질랜드
중요 5대 품목 등 (쌀, 보리,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감미자원작물, 닭 고기·닭고기조제품)	관세 삭감철폐에서 제외		
채소과수 등	· 생산자 단체가 가공업무용으로 국산품의 반격을 도모하고자 하는 많은 품목을 관세 삭감철폐에서 제외. · 국산품만으로는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힘든 것과 국산품과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장기에 걸친 철폐 기간을 확보.	채소는 기본적으로 관세 삭감·철폐에서 제외하는 등 대 중국 이상의 품목을 관세 삭감철폐에서 제외.	TPP, 일본-EU EPA보다도 대폭 낮아 기체결된 EPA 범위 내 수준.
임산물	· 품목 절반을 관세 삭감철폐에서 제외. · 관세 삭감철폐는 수입 실적이 없거나 소액인 품목에 한함.	· 품목 약 1/3을 관세 삭감철폐에서 제외. · 관세 삭감철폐는 수입 실적이 없거나 소액인 품목에 한함.	TPP, 일본-EU EPA보다도 대폭 낮아 기체결된 EPA 범위 내 수준.
수산물	· 생산자 단체가 가공업무용으로 국산품의 반격을 도모하고자 하는 많은 품목을 관세 삭감철폐에서 제외. · 국산품만으로는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힘든 것과 국산품과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장기에 걸친 철폐 기간을 확보.	대 중국 이상의 품목을 관세 삭감철폐에서 제외.	TPP, 일본-EU EPA보다도 대폭 낮아 기체결된 EPA 범위 내 수준.

II-3 각 상품의 합의 개요(농림수산물)

일본 상품의 RCEP 참여국에 대한 접근

- (1) 14억 인구를 둔 거대 시장인 중국으로부터 가리비 등의 수출 관심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확보.
- (2) 또 한국으로부터 캔디, 판초콜릿 등의 과자, 인도네시아로부터는 쇠고기 등에 대해 관세 철폐 확보.

	품 목	현 관세율	합의 내용
중국	즉석밥 등	10%	21년차 철폐
	쌀과자	10%	21년차 철폐
	소스혼합조미료	12%	21년차 철폐
	간장	12%	21년차 철폐
	초콜릿과자	8%, 10%	11년차 또는 16년차 철폐
	절화	10%, 23%	11년차 또는 21년차 철폐
	가리비(※양식용(무관세) 제외)	10%	11년차 또는 21년차 철폐
	방어	7%	11년차 또는 16년차 철폐
	연어	5%, 7%, 10%	11년차 또는 21년차 철폐
	명태	5%, 7%	11년차 또는 21년차 철폐
	합판(침엽수)	2%	11년차 철폐
한국	캔디	8%	10년차 철폐
	판초콜릿	8%	즉시 철폐 또는 10년차 철폐
	건축용 목공품(창, 문, 기둥과 들보)	8%	10년차 철폐
인도네시아	쇠고기	5%	즉시 철폐 또는 15년차 철폐
	간장	5%	10년차 철폐

II-3 각 상품의 합의 개요(공업제품)

1. 첫 경제연계협정 체결 상대인 중국, 한국으로부터 관세 분야에서 다음의 성과

< 중국 >

- 대 일본 무관세 품목 비율 상승(8%→86%).
- 자동차부품과 관련해 약 87%의 품목(대 중국 수출 5조 엔)을 관세 철폐.
(예) 전기자동차용 중요 부품(모터, 리튬이온 축전지 전극·소재 등)
회발유차용 중요 부품(엔진부품, 캠샤프트, 엔진용 펌프 등)
- 주요 수출 품목인 중대형차 일부 등(대 중국 수출 3,000억 엔)에 대해 중국이 스스로 인하한 세율(25%→15%)을 협정상에서 약속해 재인상을 방지.
- 철강제품(예: 열연강판의 대부분, 합금강의 일부) 및 가전(예: 오븐, 전자레인지, 냉장고), 섬유제품(예: 합성섬유(장섬유) 직물의 대부분, 부직포) 등의 관세 철폐.

< 한국 >

- 대 일본 무관세 품목 비율 상승(19%→92%).
- 자동차부품과 관련해 약 78%의 품목(대 한국 수출 1,900억 엔)을 관세 철폐.
(예) 캠샤프트, 에어백 및 그 부품, 전자계 부품 등
- 화학제품(대 한국 수출 1.1조 엔, 예: 액정 디스플레이용 보호 필름 원료), 섬유제품(예: 합성섬유(장섬유) 직물의 대부분, 면직물의 대부분) 등도 관세 철폐.

2. 대 ASEAN의 경우 기존 경제연계협정 대비 추가분 확보

< 인도네시아 > 철강제품(예: 저장조·탱크, 스프링의 일부), 캠핑카

< 태국 > 자동차부품의 일부(예: 디젤엔진부품의 일부)

< 캄보디아 > 승용차 일부 < 라오스 > 승용차의 대부분 등

II-3 각 상품의 합의 개요(공업제품)

품목명	구체적 품목	양허 내용(주: 유관세 품목)			기준세율 (2014년 1월 현재 MFN) (주: 유관세 품목)
		대 ASEAN·호주·뉴질랜드	대 중국	대 한국	
산업용 알코올	변성알코올	16년차 철폐	제외		27.2% 외 종량세
	에틸알코올	16년차 철폐	제외		10%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 등 (바이오디젤 제외)	대부분 즉시, 일부는 16년차 철폐	즉시, 16년차 철폐, 제외 등		2.2~7.9% 외 종량세
	바이오디젤	대부분 11년차, 일부는 즉시, 16년차 철폐	대부분 16년차, 일부는 즉시 철폐, 제외	대부분 제외, 일부는 즉시 철폐 등	
화학	무기화학품, 유기화학품, 플라스틱제품 등	대부분 즉시 철폐	즉시, 11년차 철폐 등		1.6~6.5% 외 혼합세
가죽·신발	가죽, 가죽제품, 모피, 젤라틴, 글루 등	대부분 16년차 철폐, 일부는 관세 유지	16년차, 21년차 철폐, 제외	제외	2.7~28% 1차 세율: 12~16%, 2차 세율: 30%
	가죽신 기타 신발 등	16년차 철폐, 관세 유지	21년차 철폐, 제외 등	제외	3.4~30% 1차 세율: 17.3~24%, 2차 세율: 30% 또는 2,400~4,300엔/pair 양자 중 고액
섬유·섬유제품 (※)	실, 직물, 기타 섬유 제품(의류 제외)	대부분 즉시 철폐	즉시, 11년차 철폐 등	대부분 즉시 철폐	2~12.6% 외 혼합세
	의류	대부분 즉시, 일부는 16년차 철폐 등	대부분 16년차, 일부는 11년차 철폐	대부분 16년차 철폐	4.4~13.4%
비철금속	구리, 니켈,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등	대부분 즉시, 일부는 16년차 철폐 등	즉시, 11년차, 16년차 철폐 등	즉시, 11년차 철폐, 제외 등	2~7.5% 외 혼합세

※섬유제품 등의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동 제도와 RCEP 협정 세율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3 각 상품의 합의 개요(주류, 담배, 소금)

일본이 지금까지 EPA를 체결한 적이 없던 중국·한국과의 사이에서 청주를 비롯한 일본산 주류 관세 철폐 확보.

일본 상품의 중국·한국에 대한 접근

주요 품목명	중국		한국	
	현 관세율	합의 내용	현 관세율	합의 내용
맥주	무관세	무관세	30%	20년차 철폐
병입 포도주	14%	11년차 철폐	15%	10~15년차 철폐
청주	40%	21년차 철폐	15%	15년차 철폐
위스키	5%	11년차 철폐 (주1)	20%	10~15년차 철폐
소주	10%	21년차 철폐	30%	20년차 철폐
퀄런	25%	제외	40%	제외
정제염	무관세	무관세	8%	15년차 철폐

(주1) 교섭 시의 관세율인 10%에서 단계적으로 삭감해 11년차에 철폐

RCEP 참여국 상품의 일본에 대한 접근

주요 품목명	현 관세율	합의 내용
맥주	무관세	무관세
병입 포도주	15% 또는 종량세(주2)	16년차 철폐
소흥주 / 막걸리	42.4엔/L	21년차 철폐
위스키	무관세	무관세
바이주 / 소주	16%	21년차 철폐
퀄런	무관세(주3)	제외
정제염	0.5엔/kg	제외

(주2) 병입 포도주 관세율은 15% 또는 125엔/L 중 낮은 세율. 다만, 그 세율이 67엔/L 이하일 경우 67엔/L

(주3) 퀄런은 잠정 무관세(WTO 협정 세율: 8.5% + 290.70엔/1000개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원산지 규정·원산지 절차 등】



2021년 12월
재무성 관세국 원산지규정실
재무성·세관 EPA원산지센터

I. RCEP 원산지 규정 구성

II. 원산지 규정

- 1 원산지 상품(제3.2조)
- 2 누적(제3.4조)
- 3 최소 공정 및 가공(제3.6조)
- 4 최소허용수준(제3.7조)
- 5 RCEP 협정의 운송 기준(제3.15조)

III. 원산지 절차

- 1 원산지 증명(제3.16조)
- 2 연결 원산지 증명(제3.19조)
- 3 일본 수입 시의 원산지 증명 절차
- 4 검증(제3.24조)
- 5 기록 유지 요건(제3.27조)
- 6 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제3.30조)

IV. RCEP 협정의 관세 차별(제2.6조)

V. 기타

I RCEP 원산지 규정 구성

- RCEP 원산지 규정 장(제3장)은 원산지 상품의 정의(원산지 기준) 및 RCEP 세율 적용을 위한 신고 절차(원산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1절(원산지 규정), 제2절(원산지 운영 절차),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Product-Specific Rules) 및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규정】

제1절 원산지 규정

〈원산지 상품〉

①완전생산 상품 ②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또는 ③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은 RCEP 협정의 원산지 상품임.

〈누적〉

타국의 원산지 상품을 자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는 부분 누적을 채택. **생산 행위의 누적과 관련해 모든 서명국에 대한 협정 발효 후 검토를 개시할 의무를 규정.**

〈최소허용수준〉

HS 제1류~제97류 상품은 가치를 기준으로 규정. **HS 제50류~제63류 상품에만** 중량 기준 규정이 있으며 **가치 기준과 비교해 선택 가능.**

제2절 원산지 운영 절차

〈특혜 신청 절차(증명 제도)〉

- ①제3자 증명 ②인증수출자에 의한 자기증명 ③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가 채택됨.
- **일본으로의 수입의 경우 수입자에 의한 자기신고도 이용 가능.**
- 당사자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 도입에는 유예 기간이 마련됨.
- **연결 원산지 증명이 채택됨.**

〈확인 절차(검증)〉

수입국 세관에 의한 ①수입자에게 정보 요청 ②수출자·생산자에게 정보 요청 ③수출국의 발급 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정보 요청 ④수출자·생산자 시설에 대한 방문(수출국 당국 등의 동의를 요함)이 규정되어 있음.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상품 HS 코드별로 규정되어 있음.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

원산지 증명서(제3자 증명), 원산지 신고(자기신고)의 최소 정보 요건이 각기 규정되어 있음.

I. RCEP 원산지 규정 구성

II. 원산지 규정

- 1 원산지 상품(제3.2조)
- 2 누적(제3.4조)
- 3 최소 공정 및 가공(제3.6조)
- 4 최소허용수준(제3.7조)
- 5 RCEP 협정의 운송 기준(제3.15조)

III. 원산지 절차

- 1 원산지 증명(제3.16조)
- 2 연결 원산지 증명(제3.19조)
- 3 일본 수입 시의 원산지 증명 절차
- 4 검증(제3.24조)
- 5 기록 유지 요건(제3.27조)
- 6 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제3.30조)

IV. RCEP 협정의 관세 차별(제2.6조)

V.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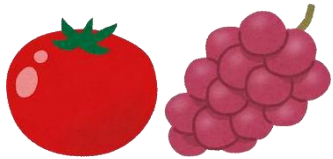
II-1 원산지 상품(제3.2조)

- RCEP 협정의 특혜관세대우(RCEP 세율)는 RCEP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만 적용된다.
- 이 협정의 목적상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상품이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 RCEP 협정은 일본-ASEAN 협정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판단에 관한 적용 대상을 각 당사자로 한정한다는 개념을 채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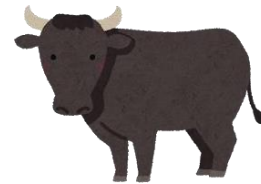
가. 완전생산 상품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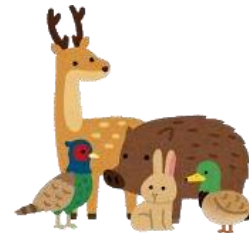
가. 당사자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과일, 채소 등)



나. 당사자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가축 등)



다. 당사자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생유 등)



라. 당사자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농작, 양식, 채집 또는 포획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야생 동물 등)



마. 당사자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의 하층토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 및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물 등)



차. 가호부터 자호까지에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그 당사자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육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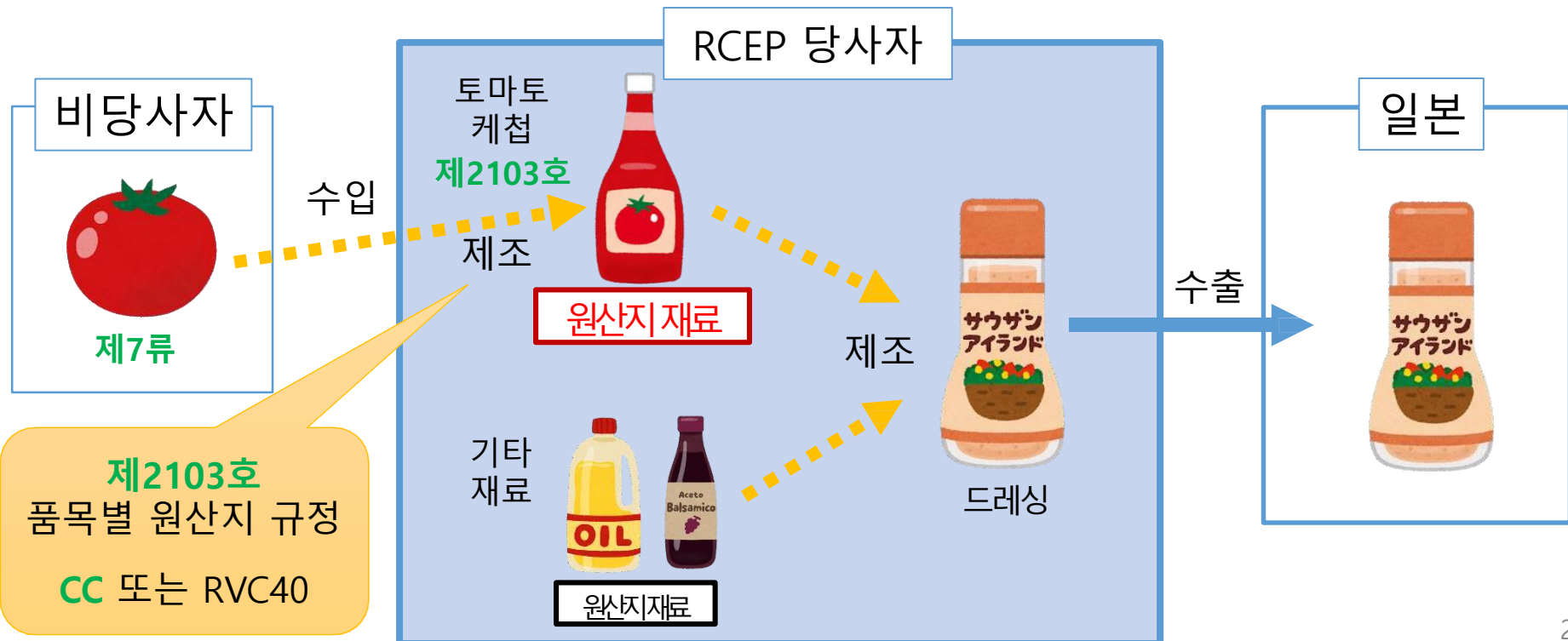
II-1 원산지 상품(제3.2조)

나.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 당사자의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일 것.
-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원산지 상품'이지만 재료의 재료를 역추적하면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의 예】



II-1 원산지 상품(제3.2조)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다만, 그 상품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했어도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작업·가공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최종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상품 HS 코드별로 '충분한 작업·가공'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의 예】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3가지 유형】

- ① 세번변경기준: 비원산지 재료와 최종 상품 사이에 특정 세번변경이 이루어짐.
- ② 부가가치기준: 상품에 일정 이상의 가치를 부여함(공제법과 집적법 채택).
- ③ 가공공정기준: 상품에 특정 가공(화학품의 화학반응)이 이루어짐.

II-1 원산지 상품(제3.2조)

포인트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은 각 EPA별로 상이함

원산지 규정은 각 EPA의 협상 결과 규정된 것이므로 각 EPA별로 상이합니다. RCEP 협정의 원산지 규정도 다른 EPA와는 상이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각 EPA의 원산지 규정은 세관 홈페이지 원산지 규정 포털 '품목별 원산지 규정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HS 제3901호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

RCEP CTH 또는 RVC40

TPP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에서 제39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및 중합체의 총 함유량의 50퍼센트 이상이 원산지 상품일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가. 35퍼센트 이상(집적법 적용 시) 혹은 나. 45퍼센트 이상(공제법 적용 시)일 것(제3901호 상품으로의 세번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음)

일본-EU EPA CTSH,
화학반응이 발생할 것,
MaxNOM 50퍼센트(EXW) 또는
RVC 55퍼센트(FOB)

II-1 원산지 상품(제3.2조)

포인트

RCEP 협정의 섬유제품에 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RCEP 협정은 원단⇒봉제의 1공정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RCEP 협정의 섬유제품에 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제61·62류가 'CC', 제63류가 'CC' 또는 'CC 또는 RVC40'으로, CC를 적용할 경우 비원산지의 원단을 사용해 당사자에서 봉제를 수행하면 규정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됩니다.

또 RCEP 협정에는 ASEAN 협정 등에서 채택 중인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 규정은 없으므로 CC를 적용할 경우 상품과 모든 비원산지 재료와의 사이에서 HS2단위 수준의 변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I-2 누적(제3.4조)

RCEP에는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당사자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될 경우 그 다른 당사자의 원산지 재료로 여길 수 있는 '부분 누적'이 채택되었다.

(※)원산지 상품(제3.2조) 요건을 준수하는 상품 또는 재료

원산지지위를 획득하기 쉬워짐

【부분 누적 적용의 예】

호주에서 생산되는 오렌지잼(제2007.91호)

재료: 오렌지(제0805호), 설탕(제1701호), 레몬즙(제2009호)

제2007.91호 품목별 원산지 규정: CC(2단위 세번변경기준)



레몬즙이 제20류이므로 CC(2단위 세번변경기준)를 충족하지 않음

⇒잼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음



레몬즙은 태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호주에서의 생산 재료로 사용됨

⇒누적을 적용해 레몬즙을 호주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

⇒CC를 충족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가 없음

⇒잼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됨



'생산 행위의 누적' 적용에 대해서는 모든 서명국에 대한 RCEP 협정의 발효일에 검토를 개시해 5년 내에 검토를 마친다.

포인트 어떤 재료가 누적의 대상인가

다른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누적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정 제3.2조(원산지 상품)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재료가 누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가 협정 제3.2조(원산지 상품)의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의 바랍니다.

이전 장표의 호주에서 생산된 잼의 사례에서는 태국에서 생산된 레몬즙에 누적을 적용했는데, 이 경우 레몬즙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레몬)가 제2009.89호(레몬즙의 HS 코드)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 중 'CC'를 충족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레몬즙을 제3.2조다호를 충족하는 태국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II-3 최소 공정 및 가공(제3.6조)

다음의 공정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수행된 경우 '최소 공정 및 가공'에 해당하므로 그 상품에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여겨진다.

가. 운송 또는 보관 목적상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나. 운송 또는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 또는 전시

다. 감별, 체질, 선별, 분류, 연마, 절단, 쪼개기, 분쇄,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로 구성되는 단순한 가공

이 조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한다.

라.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에 마크, 라벨, 로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의 부착 또는 인쇄

마.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

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사. 동물의 도살

이 조의 목적상,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을 말한다

아.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자. 단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차.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또는

카. 가호부터 차호까지에 언급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비원산지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당사자에서 수행된 공정이 상기에 해당할 경우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함.

II-4 최소허용수준(제3.7조)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른 세번변경기준(CC,CTH,CTSH)을 충족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가 있을 경우에도 최소허용수준이라면 그 상품을 RCEP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쉬워짐

【최소허용수준이란】

가. HS 제1류~제97류에 분류된 상품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FOB의 10% 이하일 경우

나. HS 제50류~제63류에 분류된 상품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의 총중량이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 이하일 경우

⇒ 제50류~제63류의 최소허용수준은 상기 가호와 나호 중 하나를 선택 가능.

【최소허용수준 적용의 예】

호주에서 생산된 오렌지잼(제2007.91호)

재료: 오렌지(제0805호), 설탕(제1701호), 레몬즙(제2009호)

제2007.91호 품목별 원산지 규정: CC(2단위 세번변경기준)



레몬즙은 제20류이므로 CC(2단위 세번변경기준)를 충족하지 않음

⇒ 레몬즙의 가치가 상품의 FOB의 10% 이하이므로 최소허용수준 적용 가능

⇒ 잼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됨

II-4 최소허용수준(제3.7조)

포인트 최소허용수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협정 제3.7조제1항가호의 최소허용 규정을 적용할 경우의 요건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의 합계가 최종 상품의 FOB의 10% 이하일 것입니다. 즉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가 여럿 있을 때는 이들의 가치의 합계가 FOB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이전 장표의 사례에 나왔던 레몬즙 외에 비원산지의 오렌지즙(제20류)도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CC(2단위 세번변경기준)를 충족하지 않는 레몬즙과 오렌지즙의 가치의 합계가 잼의 FOB의 10% 이하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장표의 잼 사례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가 여럿 있을 경우】

비원산지 재료



제8류

제17류



5USD 6USD

제20류

= CC를 충족하지 않음

잼 100USD
레몬즙 5USD / 오렌지즙 6USD

$$\Rightarrow (5 + 6) / 100 \times 100 = 11\% \geq 10\%$$

⇒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의 합계가 10% 이상

⇒ 최소허용수준 규정을 충족하지 않음

⇒ 잼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음

II-5 RCEP 협정의 운송 기준(제3.15조)

- RCEP 협정의 '운송 기준'은 제3.15조(직접 운송)에 규정되어 있다.
-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 지위가 유지된다.
 - 가. 수출 당사자에서 수입 당사자로 직접 운송될 경우
 - 나. 제3국(비당사자 또는 경유국인 당사자(이하 "중간 경유 당사자들"이라 한다))을 통하여 운송되었을 경우로 다음 1) 및 2)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 1) 제3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 2) 제3국에서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을 것(※)하역, 재선적, 보관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과 같은 물류 활동은 제외함.
- 상기 나호 요건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제3국의 통관 서류나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이 요청하는 서류를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45쪽 참조).



나. 제3국(비당사자 또는 중간 경유 당사자들)을 통할 경우

 다른 RCEP 당사자를 통하여 운송되는 경우도 운송 기준의 대상이 된다.

I. RCEP 원산지 규정 구성

II. 원산지 규정

- 1 원산지 상품(제3.2조)
- 2 누적(제3.4조)
- 3 최소 공정 및 가공(제3.6조)
- 4 최소허용수준(제3.7조)
- 5 RCEP 협정의 운송 기준(제3.15조)

III. 원산지 절차

- 1 원산지 증명(제3.16조)
- 2 연결 원산지 증명(제3.19조)
- 3 일본 수입 시의 원산지 증명 절차
- 4 검증(제3.24조)
- 5 기록 유지 요건(제3.27조)
- 6 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제3.30조)

IV. RCEP 협정의 관세 차별(제2.6조)

V. 기타

Ⅲ-1 원산지 증명(제3.16조)

➤ RCEP 협정의 원산지 증명은 다음 3종류

가.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제3자 증명 제도】**

나.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 **【인증수출자 제도】**

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

(※) 각 당사자의 제도 도입에 일정 유예 기간(발효로부터 10년 내(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내), 10년을 한도로 연장 가능)이 마련되었으며 수출국·수입국 쌍방에 도입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

협정 발효일부터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를 도입하는 당사자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 일본의 원산지 증명은 상기 3종류+1종류로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가 추가됨

일본으로의 수입 시에만 협정 발효일부터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를 원산지 증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일본 외의 당사자에서는 협정이 모든 서명국에서 발효된 후 도입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수입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



일본의 경우(협정 발효 시)

【수입】 상기 가호, 나호, 다호 및 '수입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 이용 가능.
다만, 다호는 호주,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에 한함.

【수출】 상기 가호, 나호, 다호를 이용 가능. 다만, 다호는 호주, 뉴질랜드로의 수출에 한함.

**새롭게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세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안내하겠습니다.**

Ⅲ-1 원산지 증명(제3.16조)

포인트

제3자 증명 제도 이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에 대하여

각 당사자의 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세관 홈페이지 원산지 규정 포털 등에서 안내하겠습니다. 일본의 발급 기관은 일본상공회의소입니다.

포인트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하여

인증수출자 제도(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는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인증한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 신고를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증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체결한 EPA 중 일본-멕시코 EPA, 일본-스위스 EPA, 일본-페루 EPA 등 3개 협정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 인증 기준, 인증수출자에 부과되는 의무 등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경제연계협정(EPA)에 따른 인증수출자 자기증명 제도 신청·이용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gensanchi/approved.html#q-1

Ⅲ-1 원산지 증명(제3.16조)

원산지 증명 최소 정보 요건(부속서 3-나)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HS)(6 단위)
- 마.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

- 바. 원산지 결정 기준
- 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신고
- 아. 발급 기관의 증명, 인장, 서명
- 자. 제2.6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 차. 송장번호, 출발일 등과 같이 탁송물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사항
- 카.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 타. 상품의 수량
- 파.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규정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

-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HS)(6 단위)
- 마. 인증수출자나 생산자의 인증번호 또는 식별번호
- 바. 고유 참조번호
- 사. 원산지 결정 기준
- 아. 작성자에 의한 증명

- 자. 제2.6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 차.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 카. 상품의 수량
- 타. 연결 원산지 신고의 규정

Ⅲ-1 원산지 증명(제3.16조)

원산지 증명서(제3자 증명 제도) 양식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name, address and country)				Certificate No. _____ Form RCEP			
2. Goods Consigned to (Importer's/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_____ (Country)			
3. Producer's name, address and country (if known)				5. For Official Use			
				Preferential Treatment: ☐ Given ☐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if known)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Country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flight number, etc.:							
Port of Discharge:							
6. Item number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of the goods (6 digit-level)	10. Origin Conferring Criterion	11. RCEP Country of Origin	12. Quantity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ment),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13.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s)
14. Remarks							
15. Declaration by the exporter or producer				16. Certification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the goods covered in this Certificate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se goods are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_____ Place and date, and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eal or stamp of issuing Body			
17. ☐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 Third-party Invoicing ☐ ISSUED RETROACTIVELY							

원산지 신고(인증수출자 제도) 양식 견본

Declaration of Origin 原産品申告書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協定)								
1. Exporter's name, address (including country), contact (phone or email address) and authorization code (in the case of approved exporter) 輸出者の氏名又は名称、住所(国名を含む)、連絡先(電話番号又は電子メールアドレス)、認定番号(認定された輸出者の場合)								
2. Producer's name, address (including country) and contact (phone or email address) if known 生産者の氏名又は名称、住所(国名を含む)、連絡先(電話番号又は電子メールアドレス)(判明している場合)								
3. Importer's or consignee's name, address (including country) and contact (phone or email address) 輸入者又は荷受人の氏名又は名称、住所(国名を含む)、連絡先(電話番号又は電子メールアドレス)								
4. Unique reference number 固有の参照番号								
No.	5. Description of the goods,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 商品の品名、仕入番番号・日付	6. HS Code (6-digit level, HS2012) 関税分類番号(6桁, HS2012)	7. Origin conferring criterion 原産性の基準	8. RCEP country of origin RCEP 原産国	9. Quantity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数量及びFOB価額			
10. Remarks その他の特記事項								
11. Information on Original Proof of Origin (in case of Back-to-back Declaration of Origin) 最初の原産地証明に関する情報(連続する原産品申告書の場合)								
12. The undersigned hereby certifi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the goods specified in this Declaration meet all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se goods are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私は、上記の情報が正確であること及びこの申告に記載された商品が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協定第3章(原産地規則)に定める全ての関連する要件を満たしていることを証明します。これらの商品は(輸入締約国)に向けて輸出されます。								
Date of Declaration 作成年月日:								
Name of the certifying person 作成者の氏名又は名称:								
Name of the agent of the certifying person 代理人の氏名又は名称:								
Address of the agent of the certifying person 代理人の住所:								
Signature 作成者の署名(日本への輸入の場合には不要):								
The certifying person ☐ Approved Exporter, ☐ Exporter, ☐ Producer, ☐ Importer 本原産品申告書の作成者 認定された輸出者 輸出者 生産者 輸入者								
(規格A4)								

Ⅲ-1 원산지 증명(제3.16조)

원산지 상품 신고서(자기신고 제도) 양식 견본 및 필수 기재 항목 1/3

협정상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최소 정보 요건(33쪽 참조)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또 협정상 RCEP 원산지 상품 신고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수입자 자기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 견본에는 각 항목의 일본어 번역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양식 견본 상단

Declaration of Origin 原産品申告書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協定)					
1. Exporter's name, address (including country) and contact (phone or email address) 輸出者の氏名又は名称、住所(国名を含む)、連絡先(電話番号又は電子メールアドレス)					
2. Producer's name, address (including country) and contact (phone or email address), if known 生産者の氏名又は名称、住所(国名を含む)、連絡先(電話番号又は電子メールアドレス)(判明している場合)					
3. Importer's or consignee's name, address (including country) and contact (phone or email address) 輸入者又は荷受人の氏名又は名称、住所(国名を含む)、連絡先(電話番号又は電子メールアドレス)					
4. Unique reference number 固有の参照番号					
No.	5. Description of the goods,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 商品の品名、仕書番号・日付	6. HS Code (6-digit level, HS2012) 関税分類番号(6桁, HS2012)	7. Origin conferring criterion 原産性の基準	8. RCEP country of origin RCEP 原産国	9. Quantity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数量及びFOB価額

【항목1~3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 또는 수하인에 관한 정보】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수입자 또는 수하인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는 필수 기재 항목. 다만, 생산자 이름 및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NOT AVAILABLE' 을 기재.

【항목4 고유 참조번호】
신고서 작성자가 관리하는 임의 정리 번호를 기재.

【항목5 품목명 및 송장번호·날짜】
상품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기재. 송장번호·날짜는 수입 시 발행된 것을 기재. 해당 송장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발행된 것이 아닐 경우(제3자 송장의 경우)에는 송장 발행자의 이름 및 국가명을 '10. Remarks'란에 기재.

【항목6 세번】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년판에 따라 6단위 세번을 기재.

Ⅲ-1 원산지 증명(제3.16조)

원산지 상품 신고서(자기신고 제도) 양식 견본 및 필수 기재 항목 2/3

양식 견본 하단

[illegible]

【항목7 원산지 기준】

적용한 원산지 기준을 기재.

(WO: 완전생산 상품, PE: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CTC: 세번변경기준, RVC: 부가가치기준(역내 가치포함비율), CR: 가공공정기준(화학반응), ACU: 누적, DMI: 최소허용수준)

항목8은 다음 장표에서 설명

【항목9 수량 및 FOB】

FOB는 원산지 기준에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적용되었을 경우에만 기재.

【항목11 원산지 증명 원본 정보】

협정 제3.19조에 따라 발급된 연결 원산지 증명의
경우 필수 기재 항목.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 연월일, 발급 국가, RCEP 원산지 국가, (적용 가능한 경우)인증수 출자 인증번호를 기재.

【항목12 작성자에 의한 서약】

수입자 자기신고일 경우 importing country는 기재할 필요 없음.

【작성자】

본 신고서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할 수 있음(해당 박스에 체크 표시할 것). 또 수입자를 대신해 수입자의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음. 일본으로의 수입일 경우 작성자 서명은 불필요.

Ⅲ-1 원산지 증명(제3.16조)

원산지 상품 신고서(자기신고 제도) 양식 견본 및 필수 기재 항목 3/3

No	5. Description of the goods,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 産品の品名、仕入書番号・日付	6. HS Code (6-digit level, HS2012) 関税分類番号 (6桁、HS2012)	7. Origin conferring criterion 原産性の基準	8. RCEP country of origin RCEP 原産国	9. Quantity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数量及びFOB価額

【항목8 RCEP 원산지 국가】

협정 제2.6조에 따라 결정된 'RCEP 원산지 국가'를 기재한다. 기재 요령은 이하 참조.

원산지 상품의 예	기재 사항
(a) 협정 부속서 I 수입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이하 '부록'이라 한다)에 적시한 원산지 상품으로 수출 당사자의 부가가치가 상품 가격의 20퍼센트 미만일 경우 (b) 부록에 적시한 품목 이외의 원산지 상품 중 협정 제3.2조나호에 언급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으로 협정 제2.6조제5항에 언급된 최소 공정 이외의 생산 공정이 수출 당사자에서 수행되지 않은 경우	수출 당사자에서 원산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자명을 기재.
상기 이외의 경우 (c) 부록에 적시한 원산지 상품으로 수출 당사자의 부가가치가 상품 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일 경우 (d) 협정 제3.2조가호에 언급된 완전생산 상품 (e) 부록에 적시한 품목 이외의 원산지 상품 중 협정 제3.2조다호에 언급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부속서 3-가)을 충족하는 상품 (f) 부록에 적시한 품목 이외의 원산지 상품 중 협정 제3.2조나호에 언급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으로 최소 공정 이외의 생산 공정이 수출 당사자에서 수행된 경우	수출 당사자명을 기재.

자신이 소유한 정보를 토대로 'RCEP 원산지 국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세율인 당사자명과 함께 *(제2.6조제6항가호일 경우) 또는 **(제2.6조제6항나호일 경우)를 기재한다.

예) Australia *, Indonesia **

주: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협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입자는 다음 중 하나의 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수입 당사자가 그러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에 기여한 당사자들로부터의 동일한 원산지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 중 최고 세율(제2.6조제6항가호)
- 수입 당사자가 당사자들로부터의 동일한 원산지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 중 최고 세율(제2.6조제6항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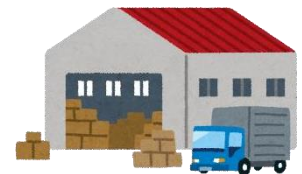
Ⅲ-2 연결 원산지 증명(제3.19조)

수출 당사자의 원산지 증명 원본에 기초해 중간 경유 당사자의 발급 기관, 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가 발급 또는 작성 가능한 원산지 증명.

- 일본-ASEAN 협정에 채택되어 있다(발급 기관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만).
- 임의 규정이므로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 연결 원산지 증명 발급이 가능한지는 해당 당사자의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제3.19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다음 장표 참조).
- '수출자가 발급하는 연결 원산지 증명' 작성은 수입 당사자가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 (※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수입 당사자에서는 원산지 증명 원본이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 일 경우 연결 원산지 증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최소 정보 요건 중 'RCEP 원산지 국가'에 대해서는 연결 원산지 증명 발급·작성 시에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 새롭게 판단해 기재하게 되어 있다.
- 【일본 수입 통관 시】 중간 경유 당사자의 수출자(인증수출자 제외)가 작성한 연결 원산지 증명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제3.19조제1항라호를 충족함을 명시하는 서류(비조작 증명 등)의 제출을 요한다.



연결 원산지 증명의 이점으로는 원산지 증명 원본에 기재된 화물을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 분할해 각 당사자로 수출할 경우 분할된 화물 별로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Ⅲ-2 연결 원산지 증명(제3.19조)

연결 원산지 증명 발급 요건(제3.19조 제1항)

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그 진정 등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연결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이 원산지 증명 원본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연결 원산지 증명이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따른 원산지 증명 원본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 당사자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 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마. 분할 수출 선적의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바. 연결 원산지 증명상 정보는 원산지 증명 원본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Ⅲ-3 일본 수입 시의 원산지 증명 절차

증명 제도		대상이 되는 수출 당사자	증명서류 취득 방법
제3자 증명 제도 (원산지 증명서)		모든 당사자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발급 기관 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 의뢰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 신고)		모든 당사자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발급 기관에 의해 인증된 수출자 가 서류 작성 (임의 양식)
자기신고 제도 (원산지 상품 신고서)	수입자	모든 당사자	일본의 수입자 가 서류 작성 (임의 양식)
	수출자 생산자	호주·뉴질랜드 ※협정 발효 시	수출 당사자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서류 작성 (임의 양식)



인증수출자 제도·자기신고 제도의 증명서류 양식에 대하여

협정상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최소 정보 요건(33쪽 참조)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 견본도 이용 가능합니다.

Ⅲ-3 일본 수입 시의 원산지 증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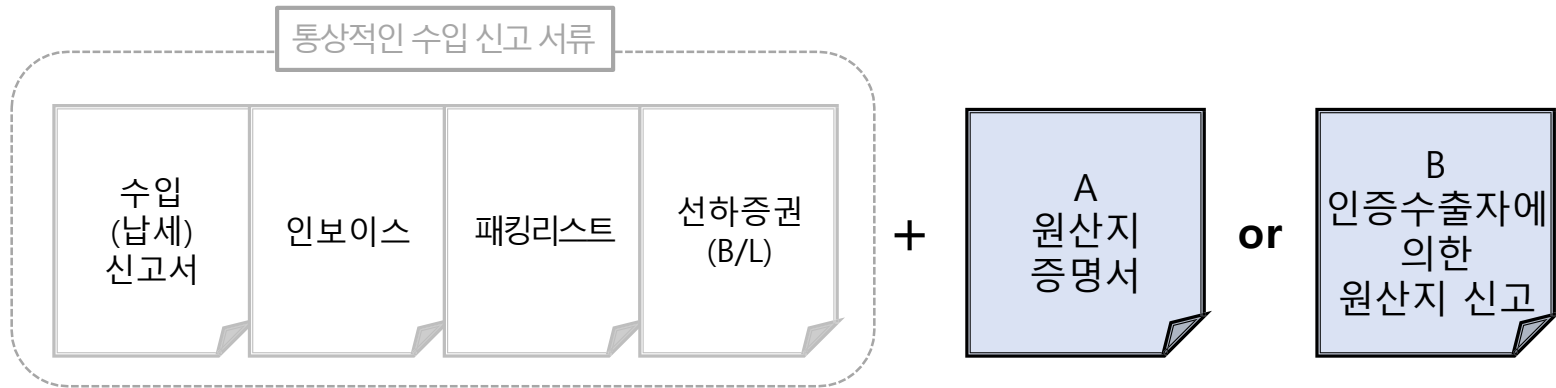
제3자 증명 제도·인증수출자 제도 이용에 대하여

- 일본으로의 수입 시에 제3자 증명 제도 또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이용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수입 신고 서류 외에 원칙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가격 총액이 20만 엔 이하인 상품에 대해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A 제3자 증명 제도일 경우 발급 기관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B 인증수출자 제도일 경우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

■ 제출 서류



- 사전심사결정을 취득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의 '화물의 원산지'에 관한 부분의 기재 사항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도 이들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AEO 수입자에 의한 특례 신고의 경우 상기 A 또는 B의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보존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AEO 수입자가 일반 수입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3 일본 수입 시의 원산지 증명 절차

자기신고 제도 이용에 대하여

- 일본으로의 수입 시에 자기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수입 신고 서류 외에 원칙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가격 총액이 20만 엔 이하인 상품에 대해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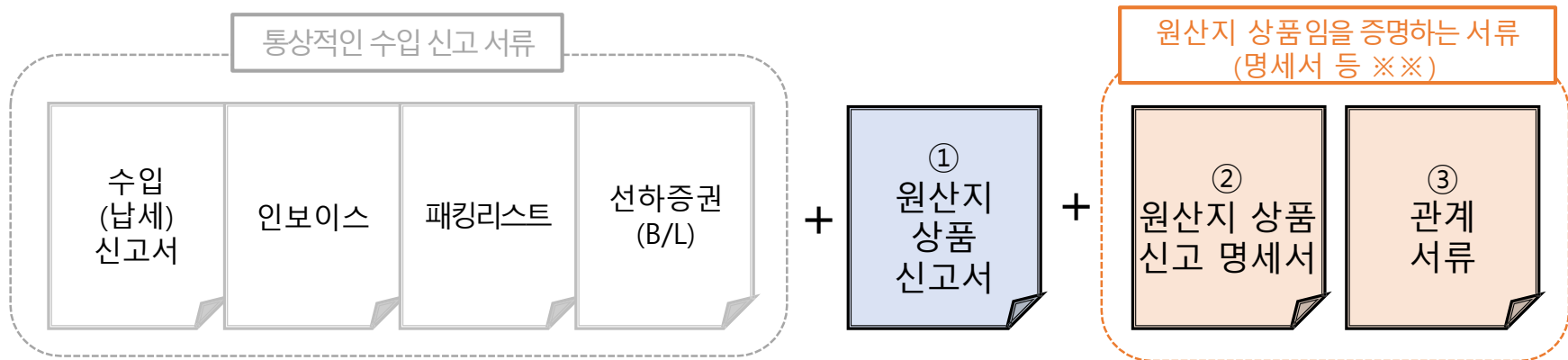
Ⅰ . 원산지 상품 신고서

Ⅱ .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

Ⅲ . 관계 서류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신고 제도의 원산지 상품 신고서·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세관 홈페이지의 양식 견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사전심사결정을 취득한 경우 또는 완전생산 상품일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 AEO 수입자에 의한 특례 신고의 경우 상기 Ⅰ, Ⅱ, Ⅲ의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보존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AEO 수입자가 일반 수입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3 일본 수입 시의 원산지 증명 절차

②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자기신고 제도) 양식 견본 및 기재 사항

原産品申告明細書 (RCEP 協定)

1. 仕入書の番号及び日付	
2. 原産品申告書における商品の番号	3. 商品の関税分類番号
4. 適用する原産性の基準 ☐ WO ☐ PE ☐ CTC・ ☐ RVC・ ☐ CR ☐ DMI ☐ ACU	
5. RCEP 原産国	
6. 上記 4. で適用した原産性の基準を満たすことに関する説明	
7. 上記 6. の説明に係る証拠書類の保有者 ☐ 生産者、 ☐ 輸出者、 ☐ 輸入者	
8. その他の特記事項	
9. 作成者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又は居所 (代理人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又は居所)	
作成 年 月 日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예시입니다.
원산지 기준을 어떻게 충족했는지에 대한 설명
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항목2 원산지 상품 신고서의 상품 번호】

원산지 상품 신고서 중 '상품 개요'의 상품란 번호 등 원산지 상품 신고서에 관한 내용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항목4 적용할 원산지 기준】

적용할 기준에 체크 표시.

【항목6 상기 항목 4에서 적용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에 관한 설명】

◆ 적용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재.

완전생산 상품: 협정 제32조가호에 언급된 하나의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협정 제32조나호에 언급된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품목별로 규정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세번변경기준(CTC):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관세율표 번호
- 부가가치기준(역내가치포함비율)(RVC): 협정 제3.5조에 언급된 공식을 통해 일정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가공공정기준(화학반응)(CR): 협정 부속서 3-가의 두주 제7항바호에 언급된 화학반응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기타 원산지 기준: 수입하려는 상품이 적용할 협정에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명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

◆ 'RCEP 원산지 국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기재.

【항목9 작성자】

본 명세서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할 수 있음.
또 수입자를 대신해 수입자의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음.

원산지 기준에 관한 기호의 예

※完全生産品、PE: 原材料のみから生産される商品、CTC: 関税分類変更基準、RVC: 付加価値基準 (国内原産割合)、CR: 加工工程基準 (化学反応)、ACU: 累積、DMI: 僅少の非原材料

(規格 A 4)

Ⅲ-3 일본 수입 시의 원산지 증명 절차

③관계 서류의 예

관계 서류란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에 기재한 설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① 완전생산 상품일 경우

계약서, 생산증명서, 제조증명서, 어획증명서 등

② 원산지 재료로만 완전히 생산된 상품일 경우

계약서, 총부품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각 재료·부품 투입 기록, 제조원가계산서, 송장, 가격표 등

③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일 경우

a.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부품표, 재료일람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등

b.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조원가계산서, 매입장, 전표, 청구서, 지불 기록, 송장, 가격표 등

c.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계약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생산내용증명서 등

④ 기타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원재료의 당사자 원산지 증명서 등, 제조원가계산서, 기타 수입하려는 상품이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기재한 자료

⑤ 'RCEP 원산지 국가' 확인을 위한 관계 서류

⑥ 중간 경유 당사자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연결 원산지 증명의 경우

연결 원산지 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된 화물에 대해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명시한 자료

➤ 관계 서류의 예

New Zealand Cheese Corporation Ltd.
Level XX, Majestic Centre, XXX Willis Street, Wellington 1, New Zealand

Bill of Materials (List of materials used)
6th February 2022

Manufacture's name: New Zealand Cheese Corporation Ltd.
Manufacture's address: Level XX, Majestic Centre, XXX Willis Street, Wellington 1, New Zealand
Product name: Cheese
Product code: XXXXX

	Ingredients	HS code	Remarks
1	Fresh milk*	04.01	
2	Salt	25.01	
3	Rennet	35.07	Gelatine (New Zealand) Rennet enzymes (derived from cow) (New Zealand) Salt (Australia) Sodium benzoate (Germany)

*Fresh milk is purchased from contract farms in New Zealand.

<Production process>

```
graph LR
    A[Fresh Milk] --> B[Sterilisation]
    B --> C[Addition of Rennet]
    C --> D[Fermentation]
    D --> E[Protein Coagulation]
    E --> F[Removal of Whey]
    F --> G[Addition of Salt]
    G --> H[Formation]
    H --> I[Packaging]
```

Bianca
Bianca Caroba - Technical Specialist

그 밖의 서류라도 계약서,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과 RCEP 원산지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가능.

Ⅲ-3 일본 수입 시의 원산지 증명 절차

운송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운송요건증명서)

- 운송 도중 제3국을 경유할 경우, 운송 기준 요건의 준수를 입증하는 서류를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29쪽 참조).
- 일본으로의 수입 시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나호에 언급된 '운송요건 증명서'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서류다.
 - 통과선하증권 사본
 - 세관 및 기타 권한 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서
 - 기타 세관장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서류(예) 수출 당사자에서 제3국 및 제3국에서 일본으로의 운송 관계 관련 서류(선하증권 등)
창고 관리책임자 등에 의한 비조작 증명서류
세관 통제하에 있는 창고로의 반출입 기록 사본 등
- 관세가격 총액이 20만 엔 이하일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제3국(비당사자 또는 중간 경유 당사자)을 경유할 경우



제3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과 관세 당국 통제하에 머물러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본 세관에 제출한다.

Ⅲ-3 일본 수입 시의 원산지 증명 절차

포인트

일본의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23조제1항 '수입 후 특혜관세의 신청'에 대하여

RCEP 협정 제3.23조제1항의 '수입 후 특혜관세의 신청' 규정은 일본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 조 제1항에 사후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동 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대우 신청 의사를 수입 시에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동 조 제2항을 적용해 허가 전 반출 제도(BP)로 대응합니다.

【제323조 수입 후 특혜관세의 신청】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이 그 당사자로 수입되었을 때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그리고 그 상품이 수입된 날 후부터 그 당사자의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로 납부된 모든 초과 관세,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원산지 증명 및 그 밖의 증거, 그리고
 - 나. 신청된 특혜관세대우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하여 관세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그러한 서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를 수입 시 그 당사자의 관세 당국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Ⅲ-3 일본 수입 시의 원산지 증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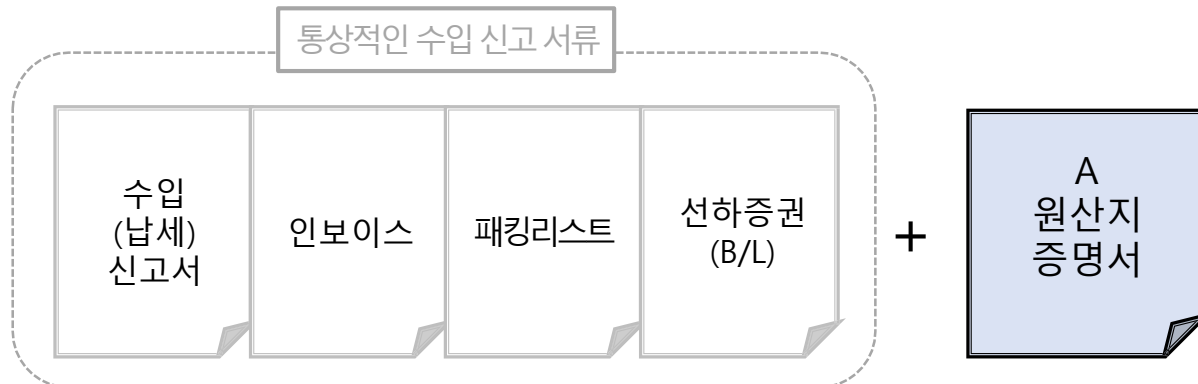
포인트

제3자 증명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세관에 대한 수입 신고 시에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제3자 증명 제도(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기초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경우, 일본 세관에 대한 수입 신고 시에 원산지 증명서 외에 별도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 등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3자 증명 제도를 이용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경우에도 수입자 자신이 그 화물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필요는 있으므로 이 점 유의바랍니다.

■ 제3자 증명 제도를 이용할 경우의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일본으로의 수입 시)



Ⅲ-3 일본 수입 시의 원산지 증명 절차

포인트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수출자에게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 수입자 자기신고를 이용할 수 있는가

수입자 자기신고는 수입 신고 시에 수입자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수입자 자기신고의 경우 수출국·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사후 확인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수입자에 대한 사후 확인 시에 수입자 자신이 수입국 세관에 정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특혜 세율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과 RCEP 원산지 국가를 명시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증명 제도를 이용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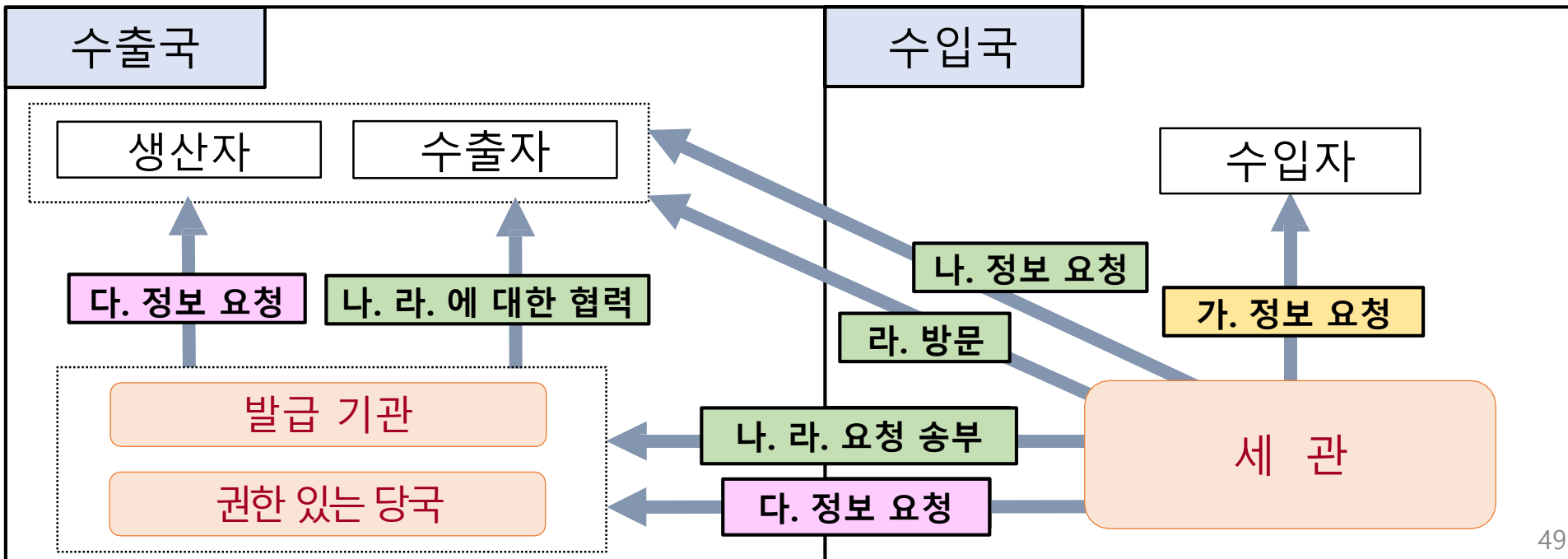
포인트

수출자 자기신고 이용 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수출자에게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명시하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한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를 작성하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 바랍니다.

Ⅲ-4 검증(제3.24조)

- RCEP 협정에서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3.24조에 따라 다음의 수단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 다. 수출 당사자의 발급 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 라. 수출 당사자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검증
 - 마.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절차
-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의 경우 상기 수단 중 가호만 실시 가능. 그 외의 제도의 경우 제3자 증명 제도, 자기신고 제도 모두 수단은 동일. 실시 순서에 대해서는 라호의 방문 검증을 통한 확인을 다호 실시 후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외에 특별한 규정은 없음.



Ⅲ-4 검증(제3.24조)

포인트 검증에 관한 각 당사자의 접촉선(콘택트 포인트)에 대하여

- 제3.24조의 각주에 당사자는 자신의 수출된 상품의 검증을 위한 단일 접촉선(콘택트 포인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 내에 접촉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일본이 수출국이 되어 상대국(수입국)으로부터 수출국 검증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접촉선을 통해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국이 일본의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도 접촉선으로 요청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이용한 증명 제도에 따라 각기 다음 기관이 수출자·생산자에게 연락합니다.
 - ◆ 제3자 증명 제도·인증수출자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상공회의소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원산지증명실
 - ◆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를 이용할 경우
재무성 관세국 관세과 원산지규정실

상대국으로부터 상기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정보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면 이용한 증명 제도에 따라 각 기관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증명 제도·인증수출자 제도: 경제산업성(원산지증명실)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 재무성(원산지규정실)

Ⅲ-5 기록 유지 요건(제3.27조)

협정 및 국내법에 따라 일본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유지해야 한다.

수입자의 유지 의무

수입 허가일 익일부터 **5년간** 다음의 서류를 유지한다.
유지해야 할 서류는 선택한 신고 제도에 따라 다르다.

- 제3자 증명 제도,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 증명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
원산지 상품 신고서 및 신고서 작성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RCEP 원산지 국가 확인을 위한 관계 서류
포함)
- 수입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
원산지 상품 신고서를 포함해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RCEP
원산지 국가 확인을 위한 관계 서류 포함)

※ 수입 신고 시에 세관에 제출한 서류는 유지 의무 대상이 아님.

Ⅲ-5 기록 유지 요건(제3.27조)

수출자·생산자의 유지 의무

수출자·생산자 자기신고의 경우 작성일부터 3년간, 제3자 증명 제도 및 인증수출자 제도를 이용한 수출자·생산자는 발급·작성일의 익일부터 3년간 다음의 서류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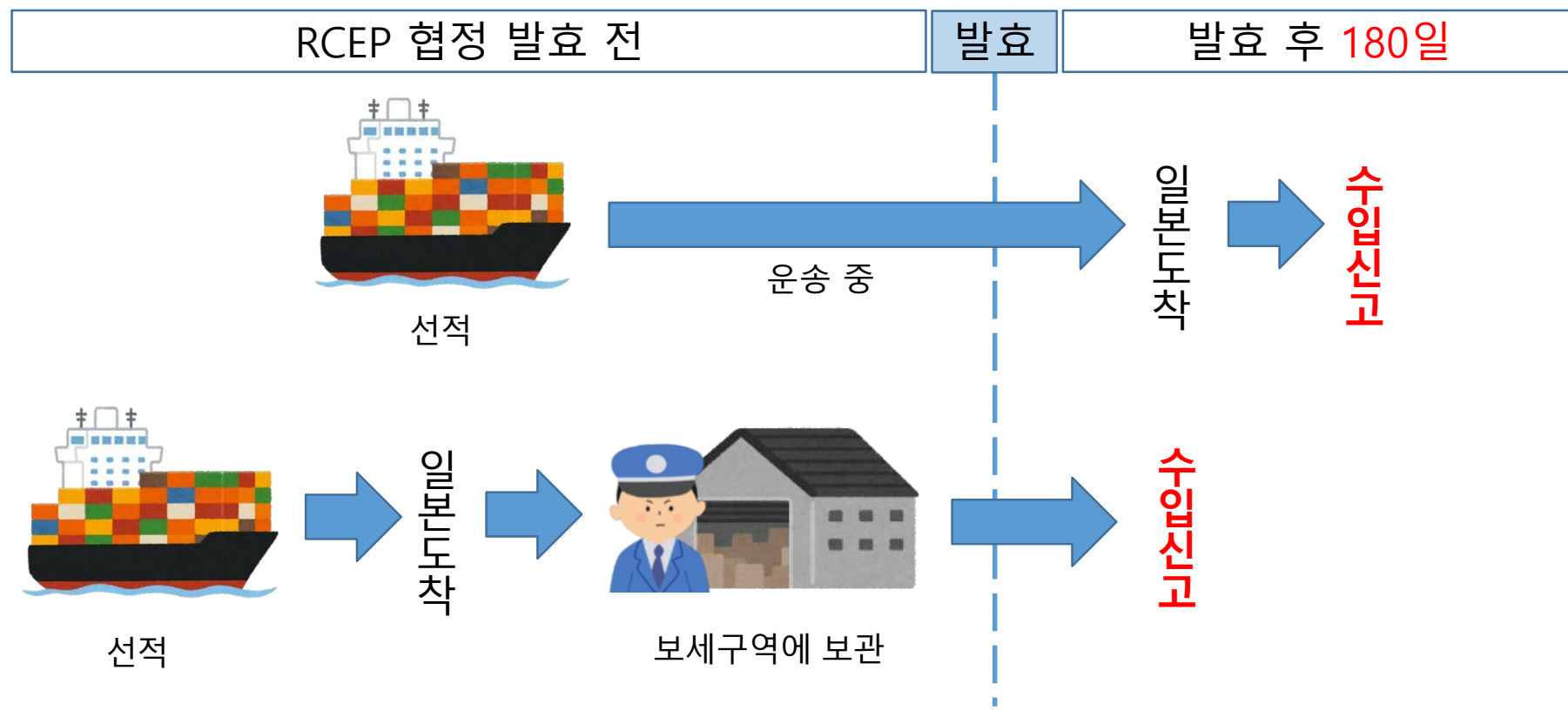
- 원산지 증명서·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원산지 상품 신고서의 사본
-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RCEP 원산지 국가 확인을 위한 관계 서류 포함)



Ⅲ-6 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제3.30조)

RCEP 협정 규정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인 다음의 화물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80일 내에 수입 신고**할 경우 필요한 특혜관세대우 신청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RCEP 협정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 동 EPA 발효일에 수출 당사자에서 수입 당사자로 운송되고 있었던 경우
- 이미 수입 당사자에 도착해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경우



(주)원산지 상품 신고서·원산지 증명서는 RCEP 협정 발효일 이후에 작성·신청해야 함

I. RCEP 원산지 규정 구성

II. 원산지 규정

- 1 원산지 상품(제3.2조)
- 2 누적(제3.4조)
- 3 최소 공정 및 가공(제3.6조)
- 4 최소허용수준(제3.7조)
- 5 RCEP 협정의 운송 기준(제3.15조)

III. 원산지 절차

- 1 원산지 증명(제3.16조)
- 2 연결 원산지 증명(제3.19조)
- 3 일본 수입 시의 원산지 증명 절차
- 4 검증(제3.24조)
- 5 기록 유지 요건(제3.27조)
- 6 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제3.30조)

IV. RCEP 협정의 관세 차별(제2.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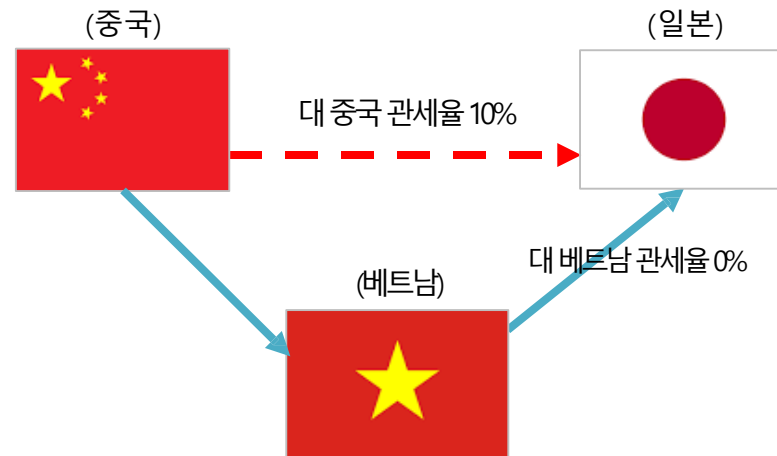
V. 기타

IV RCEP 협정의 관세 차별(제2.6조) 배경 및 개요

관세 차별 규정 설정 배경

- RCEP 협정에는 상대국에 따라 양허 내용이 다른 국가가 있다(일본,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7개국).
- 일본의 경우 ①ASEAN·호주뉴질랜드 ②중국 ③한국 등 3 그룹별로 양허 내용이 다르고 그 결과 동일 원산지 상품에 대해 상대국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 관세 차별 발생 품목일 경우 우회 수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RCEP 협정 제2.6조(관세 차별)에 관세 차별이 규정되어 있다.

예시



관세 차별 규정의 개요(RCEP 제2.6조)

(1) 기본 규정(제26조제2항)

RCEP 원산지 국가는 RCEP 원산지 규정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이다. 다만,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일 경우 수출국에서 최소 공정 외의 생산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2) 특정 품목에 대한 특별 규정(제26조제3항)

수입국이 자신의 양허표 부록에 적시한 원산지 상품(일본은 100품목 기재)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20%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출국이 RCEP 원산지 국가가 된다.

(3) 보완적 규정(제26조제4항)

상기 (1), (2)로 원산지 국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최고 가치의 원산지 재료를 기여한 당사자가 RCEP 원산지 국가가 된다.

(4) 수입자의 선택에 따르는 규정(제26조제6항)

상기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는 원산지 재료를 제공한 당사자 또는 모든 당사자 중 최고 세율을 선택 가능하다.

IV RCEP 협정의 관세 차별(제2.6조) RCEP 원산지 국가 확인 단계

일본으로의 수입 시 관세 차별 품목의 RCEP 원산지 국가 확인 포인트

- 1단계 수입하려는 상품의 세번 9단위 코드를 확인한다.
⇒ 품목 분류에 관한 사전심사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index.htm#a>
- 2단계 상품 수출국에 대해 RCEP 세율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1단계에서 확인한 세번 9단위 코드를 토대로 세관 홈페이지의 실행관세율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jp/tariff/index.htm>
- 3단계 상품이 협정상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원산지에 관한 사전심사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jp/zeikan/seido/index.htm#h>

- 4단계 RCEP 원산지 국가를 결정한다(관세 차별 규정을 적용).
- ① 상품에 관세 차별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 2단계에서 확인한 실행관세율표에서 RCEP 협정세율란(상대국별로 총 3열)에 전부 동일 세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관세 차별 발생 품목입니다.
 - ② ①에서 관세 차별이 발생한 경우, 1단계에서 확인한 세번 9단위 코드가 부록의 100품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100품목 리스트를 확인 바랍니다(세관 홈페이지에 공표 예정).
 - ③ 다음 장표의 도식에 따라 RCEP 원산지 국가를 결정해 원산지 증명에 기재한다.

IV RCEP 협정의 관세 차별(제2.6조) 도식

RCEP 원산지 국가 결정 도식 (상품 무역 장의 제2.6조에 따른 도식)

일본의 양허표 부록상 특정 원산지 상품(100품목)에 해당합니까?

Yes

No

수출 당사자인 최종 상품 선적 국가에서
2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습니까?

Yes

No

수출 당사자
(제2.6조제3항)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
를 기여한 당사자
(제2.6조제4항)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는 생
산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모든 당사자 중
최고 세율을 선택 가능(제2.6조제6항)

① 완전생산 상품 ②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③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중 하나입니까?

① 또는 ③

②

수출 당사자
(제2.6조제2항)

최소 공정 이외의 생산 공정(※)이
수출 당사자에서 수행되었습니까?

Yes

No

수출 당사자
(제2.6조제2항)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자
(제2.6조제4항)

※"최소 공정"은 운송, 보관 또는 판매를 위한 보존 또는 포장, 선별, 분류, 절단 등으로 구성된 단순한 공정, 구별 표시, 인쇄, 단순 희석, 분해, 도살, 페인팅, 광택, 단순한 혼합, 앞서 언급된 공정의 조합 등의 공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제2.6조제5항 참조).

● 대부분의 경우 RCEP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자(=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획득한 국가)와 동일합니다.

I. RCEP 원산지 규정 구성

II. 원산지 규정

- 1 원산지 상품(제3.2조)
- 2 누적(제3.4조)
- 3 최소 공정 및 가공(제3.6조)
- 4 최소허용수준(제3.7조)
- 5 RCEP 협정의 운송 기준(제3.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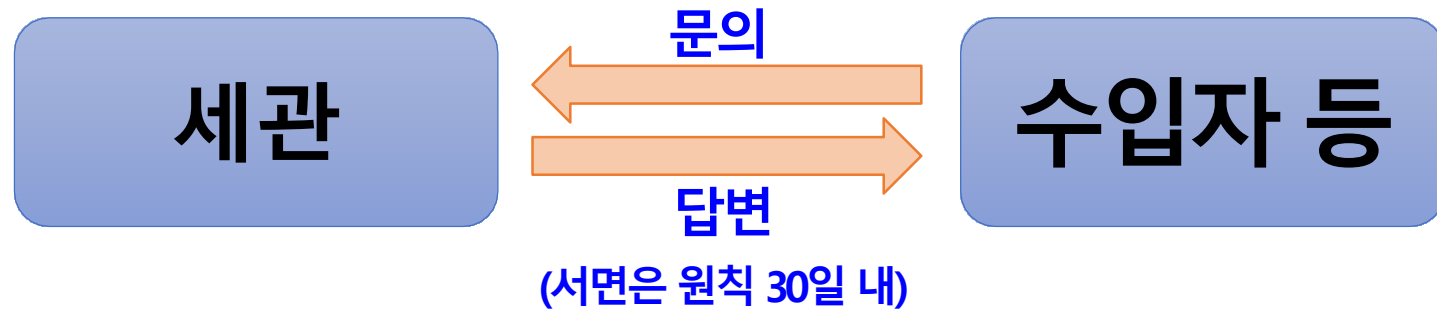
III. 원산지 절차

- 1 원산지 증명(제3.16조)
- 2 연결 원산지 증명(제3.19조)
- 3 일본 수입 시의 원산지 증명 절차
- 4 검증(제3.24조)
- 5 기록 유지 요건(제3.27조)
- 6 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제3.30조)

IV. RCEP 협정의 관세 차별(제2.6조)

V. 기타

V-1 【수입】 사전심사결정 제도



- 사전심사결정은 화물을 수입하려는 분이나 기타 관계자가 세관을 대상으로 수입 전에 수입할 예정인 화물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협정의 적용·해석 등)를 서면으로 문의해 세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수입할 예정인 화물의 원산지, RCEP 협정 세율(특혜관세) 적용 여부 등을 미리 알 수 있고 적용될 세율을 사전에 알 수 있어 수입 관련 비용 등의 계획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 RCEP 협정 제2.6조에 언급된 'RCEP 원산지 국가'도 사전심사결정 답변 대상입니다(희망제).
- 화물이 실제로 수입될 때의 수입 통관 시에는 사전심사결정을 통해 이미 해당 화물의 지위(원산지)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신고, 화물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세관이 발표한 답변(심사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최장 3년간 세관 수입 신고 심사 시 유효(법 개정 등으로 인해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 등을 제외함)하므로 계속적으로 같은 화물을 수입할 경우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두나 이메일을 통한 사전심사결정 문의(서면을 통한 사전심사결정 문의에 준하는 지위로 전환한 경우를 제외함)의 경우 수입 신고 심사 시에 유효하지 않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일본 세관의 서면을 통한 사전심사결정은 RCEP 협정 발효 전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시 등은 추후 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V-1 【수입】 사전심사결정 제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사전심사결정 문의 및 원산지 규정·관련 통관 절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	전화번호	메일 주소
하코다테 세관 업무부 원산지조사관	0138-40-4255	hkd-gyomu-gensan@customs.go.jp
도쿄 세관 업무부 수석 원산지조사관	03-3599-6527	tyo-gyomu-origin@customs.go.jp
요코하마 세관 업무부 원산지조사관	045-212-6174	yok-gensanchi@customs.go.jp
나고야 세관 업무부 수석 원산지조사관 시미즈 세관 지서 원산지조사관	052-654-4205 054-352-6114	nagoya-gyomu-gensanchi@customs.go.jp nagoya-shimizu-gensanchi@customs.go.jp
오사카 세관 업무부 수석 원산지조사관	06-6576-3196	osaka-gensanchi@customs.go.jp
고베 세관 업무부 수석 원산지조사관	078-333-3097	kobe-gensan@customs.go.jp
모지 세관 업무부 원산지조사관	050-3530-8369	moji-gyomu@customs.go.jp
나가사키 세관 업무부 원산지조사관	095-828-8801	nagasaki-gensanchi@customs.go.jp
오키나와 지구 세관 업무부 원산지조사관	098-943-7830	oki-9a-gensanchi@customs.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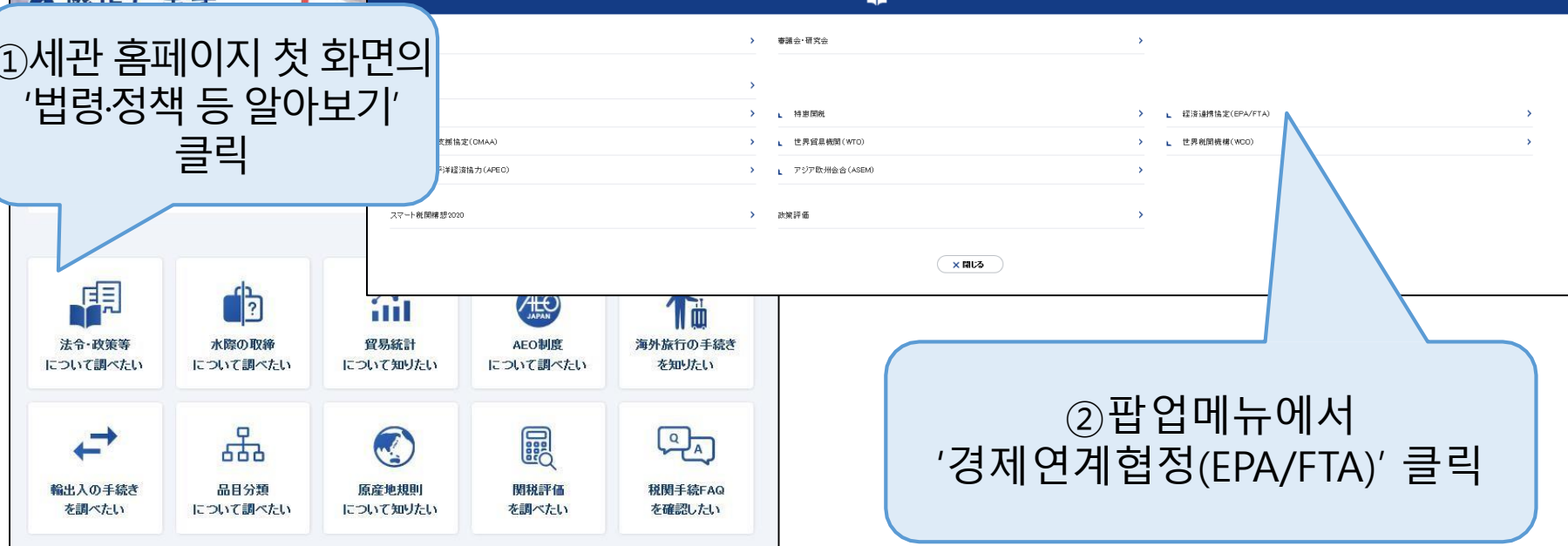
V-2 RCEP 협정 등, EPA 관련 정보

- RCEP 협정·재무성 소관 물품의 품목별 협상 결과
https://www.mof.go.jp/customs_tariff/trade/international/EPA/20201115.pdf
- RCEP 협정 조문, 원산지 규정 등
<https://www.customs.go.jp/roo/information/rcep.htm>
- EPA의 관세 제도, 통관 절차, 개요, 협정 본문, 적용 세율 등의 정보
https://www.customs.go.jp/kyotsu/kokusai/fta-EPA_index.htm
- EPA의 원산지 규정 관련 정보(원산지 포털)
<https://www.customs.go.jp/roo/index.htm>
-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절차에 관한 문의처:
<https://www.customs.go.jp/roo/origin/question.htm>
- EPA 이용에 관한 요망·질문 등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jp/quest/index.htm>

- 각 EPA 이용과 관련해서는 세관 홈페이지 '경제연계협정(EPA/FTA)' 페이지를 활용 바랍니다.
- EPA의 관세 제도, 통관 절차, 개요, 협정 본문, 적용 세율 등의 정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①세관 홈페이지 첫 화면의
'법령·정책 등 알아보기'
클릭



②팝업메뉴에서
'경제연계협정(EPA/FTA)' 클릭

경제연계협정(EPA/FTA) 페이지 https://www.customs.go.jp/kyotsu/kokusai/fta-EPA_index.htm

税関 Japan Customs

現在位置: [ホーム](#) > [経済連携協定 \(EPA/FTA\) 等](#) (関税・税関関係)

経済連携協定 (EPA/FTA) 等 (関税・税関関係)

お知らせ

- ペルー共和国におけるTPP11協定の発効日等について
- 「EPA利用に係るアンケート」の調査結果(公益財団法人日本関税協会)
- 日英EPAの発効について
-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 協定が11月15日に署名されました
- 日英EPAが10月23日に署名されました
- 日EU・EPAを利用した日本からEUへの輸出に関するお知らせ(国府庁法人数公表サイトへの掲載記録)
- 日EU・EPA「自己申告制度」利用の手引き[PDF:29.7KB]
- EPAの自己申告制度を利用した輸出についての説明(対面又はメール)

このページでは、我が国が締結・交渉している経済連携協定等に関する要、取正文、適用税率等を掲載しております。

関税制度・通関手続

(動画: 税関チャンネル)「経済連携協定 (EPA) とは何か? メリット short ver. 4分36秒 (EPAとは何かを中心に説明しています) long ver. 12分6秒 (利用手順をより詳しく説明しています)」

(パンフレット) [「EPA～経済連携協定の利用にあたって～」](#) ※動画とはほぼ同じ内容です。

(注) 輸出相手国の関税率を調べたい方は、日本貿易振興機構 (JETRO) ホームページに掲載されている「[世界各国の関税率](#)」(World Tariff) で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 (1) 関税減税について

経済連携協定等では、協定で規定する[最低税率](#)を満たす締約相手国の物品に関し、減税表のスケジュールに従って関税を撤廃又は引き下げる約束(関税減税)をしています。関税減税には、協定発効日に関税が撤廃される即時撤廃や、段階的に関税を引き下げ撤廃する段階的関税撤廃(特恵税率)、一定数量以内の輸入品に限り無税又は低税率の関税を適用する[関税減税](#)があります。

【参考】

- 経済連携協定の構造
 - [経済連携協定の構造 \(日タイEPAの例\) \[14kb,PDF\]](#)
 - [減税表の読み方 \(日マレーシアEPAの例\) \[21kb,PDF\]](#)
 - [減税表のスケジュールについて \(日マレーシアEPAの例\) \[23kb,PDF\]](#)
- 我が国及び相手国の関税(関税率)
 - [実行関税率表 \(我が国の関税率\)](#)
 - [スケーリング表 \(EPA等において我が国が約束した関税率の表\)](#)
 - [相手国制度関税率\(相手国が約束した関税率\)](#)

RCEP 협상 개요·경위
 협정 본문
 6월 실시한 설명회 Q&A 등

일본 측 관세율 일람표
 상대국 측 양허표

各協定の概要、条文等

- [我が国が締結したEPA等の概要、条文等](#)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に関する資料(2020年11月15日署名)

- [RCEP交渉の概要\[PDF:477KB\]](#)
- [RCEP交渉の経緯【外務省HP】](#)
- [協定本文等その他参考資料](#)
-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業務説明会Q&A解説の配信を実施しました](#) **NEW**
-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業務説明会のQ&Aを掲載しました](#) **NEW**

[TPP11協定\(CPTPP\)に関する資料\(2018年12月30日発効\)](#)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に関する資料\(2020年11月15日署名\)](#)

[日中韓FTAに関する資料](#)

参考リンク

- [財務省貿易統計](#)
- [経済連携協定別時系列表](#)
- [輸入統計品目表\(実行関税率表\)](#)
- [関税率表解説・分類例](#)
- [外国為替相場](#)
- [関税のしくみ](#)
- [カスタムスアンサー](#)

EPAの利用に関するご要望・ご質問等について

EPAの利用(輸出・輸入)に関し、ご要望やご質問等がございましたら、下記のリンクよりご連絡下さい。

- [ご相談はこちら](#)

EPA 이용에 관한
 요망·질문

일본 측 관세율 일람표 게재 페이지

일본 측 RCEP 관세율 일람표는 세관 홈페이지 게재를 위해 준비 중입니다.
협정 발효 전에 공표하겠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Japan Customs website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Header:** Japan Customs logo, navigation buttons (Home, About, Contact, etc.), and language options (Japanese, English).
- Breadcrumb:** 現在位置: ホーム > 経済連携協定 (FTA/EPA) (関税・税関関係) > 締結済・交渉中の各EPAの概要、協定条文等 > ステージング表をご利用になる前に
- Main Content:**
 - Important Notice:** (重要) ステージング表をご利用になる前にお読みください. Text explains the purpose of the staging table and its accuracy.
 - Staging Table Content:** ステージング表記載内容についての注意事項. Lists three points regarding the table's creation and usage.
 - Links:** EPA等のステージング表 (日本側関税率一覧) へのリンク. Provides links to RCEP and Mexico EPA staging tables in PDF and CSV formats.
- Right Sidebar:**
 - 財務省関税局・税関の組織**
 - 財務省関税局・税関の紹介
 - 税関所在案内
 - 所管の法人に関する情報
 - 施設等機関**
 - 関税中央分析所
 - 税関研修所
 - 関税政策・税関行政**
 - 所管法令等
 - 特殊関税
 - 審議会・研究会
 - 政策評価 (関税局・税関関連)
 - 国際機関 (WTO・WCO)

V-2 RCEP 협정 등, EPA 관련 정보 【최신 RCEP 협정 세율 확인】

최신 RCEP 협정 세율 확인

RCEP 협정 발효에 따른 일본 측 최신 RCEP 협정 세율에 관한 정보는 세관 홈페이지의 실행관세율표 내 RCEP 협정 세율란에 추가됩니다.

①세관 홈페이지 첫 화면의 '품목 분류 알아보기' 클릭

②팝업메뉴에서 '실행관세율표' 클릭

③최신 '실행관세율표' 클릭

수입통계품목표(실행관세율표) 일람 페이지
<https://www.customs.go.jp/tariff/index.htm>

실행관세율표

RCEP 협정 세율은 근시일 내에 추가하겠습니다.

統計番号 Statistical code		品名 Description	關稅率 Tariff rate										關稅率 Tariff rate
番号 H.S.code			基本 General	暫定 Temporary	WTO協定 WTO	特恵 GSP	特別特恵 LDC	モンゴル Mongolia	TPP11 (CPTPP)	欧州連合 EU	英国 UK	日米 貿易協定	
03.01		魚（生きているものに限る。）											
		觀賞用の魚											
0301.11		淡水魚											
	100	1 こい（キュプリヌス属のもの）及び金魚（カラシウス・アウラトゥス）	5%		3.5%		無税	1.6%	無税	無税	無税		
	200	2 その他のもの	2.5%		1.7%	無税		無税	無税	無税	無税		

RCEP
추가 예정

V-2 RCEP 협정 등, EPA 관련 정보【원산지 규정 포털】

- 원산지 규정 포털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품목별 원산지 규정 검색, 자기신고 제도 양식 견본, 사전심사결정, 사후 확인에 관한 정보 외에 **EPA/GSP 원산지 위반 사례**도 소개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Japan Customs website. At the top, there's a header with the Japan Customs logo and navigation links. Below the header, there's a main banner area with a large blue button labeled '원산지 규정 알아보기' (Learn about Rules of Origin). A callout bubble points to this button, stating: '①세관 홈페이지 첫 화면의 '원산지 규정 알아보기' 클릭' (Click 'Learn about Rules of Origin' on the first screen of the customs homepage). Below the banner, there's a section titled '원산지 규정 포털' (Rules of Origin Portal) with a list of links. A second callout bubble points to this section, stating: '②팝업메뉴에서 '원산지 규정 포털'을 선택합니다. 또는 검색하려는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Select 'Rules of Origin Portal' from the popup menu. Or, clicking the menu you want to search for will take you directly to the corresponding page). The bottom of the page features a row of icons for various services: '輸出入の手続きを調べたい' (I want to check the import/export procedures), '品目分類について調べたい' (I want to check about item classification), '原産地規則について知りたい' (I want to know about the rules of origin), '関税評価を調べたい' (I want to check about customs valuation), and '税関手続FAQを確認したい' (I want to check the customs procedure FAQ).

①세관 홈페이지 첫 화면의
'원산지 규정 알아보기'
클릭

②팝업메뉴에서
'원산지 규정 포털'을 선택합니다.
또는 검색하려는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V-2 RCEP 협정 등, EPA 관련 정보 【원산지 규정 포털】

원산지 규정 포털 <https://www.customs.go.jp/roo/index.htm>

The screenshot shows the 'Origin Rules Portal' (原産地規則ポータル) website. It features a top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Origin Rules', 'Agreements/Laws', 'Origin Certification Procedures', 'Pre-shipment Guidance', and 'Post-shipment Confirmation'.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ctions for 'Origin Rules', 'Agreements/Laws', 'Origin Certification Procedures', 'Pre-shipment Guidance', and 'Post-shipment Confirmation'. A sidebar on the left provides a search function for 'Origin Rules by Product Category'. A right sidebar contains a 'New Information' section and a 'Useful EPA/GSP Information' section. Callouts highlight specific features: 'Pre-shipment inspection decision information and public response status' (事前심사결정 정보 · 공개 답변 일람표 등), 'Post-shipment confirmation information and case collection' (사후 확인 정보 · 위반 사례집 등), 'Asia-Pacific region RCEP agreement selection, agreement text, and origin rules information'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RCEP 협정 선택, 협정 조문, 원산지 규정 등의 정보), 'Self-declaration system and sample collection' (자기신고 제도 양식 견본집), 'Self-declaration system and export consultation' (자기신고 제도 수출 상담), and 'Product-specific origin rules search system' (품목별 원산지 규정 검색 시스템).

원산지 규정 포털

새로운 정보 (원산지 규정 포털)

원산지 규정 정보 · 공개 답변 일람표 등

사후 확인 정보 · 위반 사례집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RCEP 협정 선택, 협정 조문, 원산지 규정 등의 정보

자기신고 제도 양식 견본집

자기신고 제도 수출 상담

품목별 원산지 규정 검색 시스템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

注意: このページのリンクにはPDFデータへのリンクがあります

1. 概要

- RCEP協定原産地規則について
- RCEP協定説明会動画
- RCEP協定説明会Q&A解説

2. 協定条文等

- 協定本文 (第3章)
- 附属書3A 品目別規則
- 附属書3B 必要的記載事項

V-2 RCEP 협정 등, EPA 관련 정보【원산지 규정 포털】

품목별 원산지 규정 검색

● RCEP 협정 HS 제3901호

원산지규정 포털

본문 | 文字サイズ | 検索 | 拡大 | English

お問合せ・その他のリンク | サイトマップ | ENHANCED BY Google

原産地規則とは | 協定・法令等 | 原産地証明手続 | 事前表示 | 事後確認

品目別原産地規則 / Product-Specific Rules

国名 / Country
RCEP /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 (RCEP) 協定

品目 / Item
3901

再検索 / New-Search

国名 / Country
RCEP /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 (RCEP) 協定

品目 / Item
3901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 (HS2012)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GREEMENT(HS2012)

HS2012				地域的な包括的経済連携(RCEP)協定(HS2012)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GREEMENT(HS2012)		
部 / Section	章 / Chapter	項 / Heading	号 / Subheading	品名 / Description	品目別原産地規則 / PSR	注 / Note
07	39			プラスチック及びその製品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第1節 一次製品 1- PRIMARY FORMS		
			3901	エチレンの重合体(一次製品に限る) 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s		
			390110	比重が0.94未満のポリエチレン Polyethylene having a specific gravity of less than 0.94	CTH又はRVC80	
			390120	比重が0.94以上のポリエチレン Polyethylene having a specific gravity of 0.94 or more	CTH又はRVC80	
			390130	エチレン-酢酸ビニル共重合体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s	CTH又はRVC80	
			390190	その他のもの Other	CTH又はRVC80	

● 日本-EU 협정 HS 제3901호

원산지규정 포털

본문 | 文字サイズ | 検索 | 拡大 | English

お問合せ・その他のリンク | サイトマップ | ENHANCED BY Google

原産地規則とは | 協定・法令等 | 原産地証明手続 | 事前表示 | 事後確認

品目別原産地規則 / Product-Specific Rules

国名 / Country
ドイツ / GERMANY

品目 / Item
3901

再検索 / New-Search

国名 / Country
ドイツ / GERMANY

品目 / Item
3901

日EU経済連携協定(HS2012) / Japan-EU EPA (HS2012)

HS2012				日EU経済連携協定(HS2012) / Japan-EU EPA (HS2012)		
部 / Section	章 / Chapter	項 / Heading	号 / Subheading	品名 / Description	品目別原産地規則 / PSR	注 / Note
07	39			プラスチック及びその製品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第1節 一次製品 1- PRIMARY FORMS		
			3901	エチレンの重合体(一次製品に限る) 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s		
			390110	比重が0.94未満のポリエチレン Polyethylene having a specific gravity of less than 0.94	CTSH 化学反応が行われること。 MaxNOM50 x (E90) 又は RVC55 x (F08)	第1節注1 / Section.1 Note 注釈5 / Note5
			390120	比重が0.94以上のポリエチレン Polyethylene having a specific gravity of 0.94 or more	CTSH 化学反応が行われること。 MaxNOM50 x (E90) 又は RVC55 x (F08)	第1節注1 / Section.1 Note 注釈5 / Note5
			390130	エチレン-酢酸ビニル共重合体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s	CTSH 化学反応が行われること。 MaxNOM50 x (E90) 又は RVC55 x (F08)	第1節注1 / Section.1 Note 注釈5 / Note5